

안 내 문

받는 분 : 회원사 대표이사

보내는사람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참 조 : 기획관리담당 부서장

날 짜 : 2023. 12. 20

대표번호 : 02-3017-7045

분 량 : 1매

제 목 :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 시행 안내

■ 법령/제도 안내 □ 출자공고문안내 □ 경조사안내 □ 회원사 등 변경사항 안내 □ 의견수렴 □ 기타

안녕하십니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.

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’의 일부 개정안이 **12월 21일부터**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 변경

- 현행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‘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’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맞게 명칭을 ‘벤처투자회사’로 변경

○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완화

- (투자 의무)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(M&A, 세컨더리 등)의 창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의무 미적용

○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규정 신설

- (규정 신설)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 신설
- (투자 의무) 투자목적회사의 창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의무 비율을 60%로 규정하되,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
- (차입 요건) 투자목적회사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차입금액은 자기자본의 400%까지 허용되며, 단일 법인(사업)에 전액을 일시에 투자하도록 제한
- (지분 참여) M&A 목적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피인수·합병법인의 임원 및 대주주의 지분 참여 허용

○ **투자의 정의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(CN) 신설**

- 투자의 정의에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‘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’ 신설 및 투자 의무 포함
 - * 조건부지분전환계약서는 협회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에서 확인 가능

○ **투자조건부융자계약(Venture Debt) 신설**

-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에 금융기관이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지분 인수권을 부여받는 ‘투자조건부융자계약’ 도입 규정 신설

○ **벤처투자회사 등록범위 확대**

- ‘상법’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회사도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

○ **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중 차입 산정 기준 명확화**

-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중 차입 산정 기준을 ‘납입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금의 비중이 20%미만 일 것’으로 개정

○ **벤처투자조합 등록 절차 간소화**

- 벤처투자조합 등록 전 단계인 ‘결성계획 제출·승인’ 절차 폐지

○ **창업기획자 겸임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완화**

- **(투자 의무)** 창업기획자를 겸임하는 벤처투자회사, 유한(책임)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, 초기창업기업 투자 목적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의무 신설
- **(행위 제한)** 사모펀드 결성, 인수·합병 목적의 다른 벤처투자회사 주식 취득, 경영 지배 목적 투자(7년 이내) 허용 등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미적용

※ 개정법 확인 :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

※ 문 의 :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(이메일: eunj5307@kvca.or.kr / Tel: 02-3017-7045)